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제7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제8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제17조제4호 중 “설치”를 “조달·설치”로 한다.

별표 2 총계 “33,275”를 “33,28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251”을 “33,256”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정부 혁신과 조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우정사업본부에 노동환경 변화 및 산업안전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과 운영지원과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예금사업단 분장 사무에 우체국펀드 판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55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61”을 “568”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4”를 “54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718”을 “6,904”로 하고, 일반직 계 “6,717”을 “6,9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88”을 “6,87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업안전감독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559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를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2”를 “25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의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5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7호 중 “해양생태계·연안습지”를 “해양생태계·갯벌 등 연안습지”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를 제5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2호의3 및 제5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의3. 연근해 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의4. 어선의 현대화 및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